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0. 7.

운영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2022년 9월 18일

나. 발 의 자: 우경란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2년 9월 22일

라. 상정일자: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2. 9. 28.)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우경란 의원)

가. 제안이유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위원의 겸임을 허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겸임 허용(안 제72조의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중복될 수 있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으로 인한 불필요한 인적·시간적 소요와 예산 등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
----------	---

발의년월일: 2022년 9월

발의자: 우경란 의원 외 3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됨에 따른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문구 삭제(안 제72조)
- 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구성(안 제72조의2)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를 “**윤리특별위원회에**”로 한다.

제72조의2의 제목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로 한다.

제7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 ②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각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이하 “행동강령 조례”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행동강령 조례 제29조부터 제31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2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u>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다.</u></p> <p>② ~ ⑤ (생략)</p> <p>제7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u>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자문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자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u></p>	<p>제72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 ----- ----- ----- ----- ----- ----- ----- <u>윤리특별위원회에</u>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7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u>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각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이하 “행동강령조례”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행동강령 조례 제2</u></p>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장기 여행·중도 사퇴·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자문위원이 꺾워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9조부터 제31조를 준용한다.

<삭 제>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삭 제>